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35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67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학교장
재 결 일 자 2019. 12. 16.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7.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35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2019년 4월경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3명은 같은 반인 피해학생의 물건을 빼앗은 후 훼손하거나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거

나 칠판지우개 가루를 옷에 묻히는 등의 괴롭힘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를 개최하여, 2019. 7. 25.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35시간,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조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7. 26.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행한 욕설은 해당학교 동급생 누구든지 하고 있는 일련의 언행이 고착되어 습관적으로 사용한 단어 또는 문장에 불과하며, 피해학생이 ‘허세충’이라는 단어로 놀림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름 또는 행동을 묘사하여 과장하고 그것을 단어로 함축한 별명을 부르는 것은 친숙함의 표현으로 피해학생의 과도한 자기 자랑을 단어로 함축한 언어에 불과하며, 별명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남성 학생이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가해학생만을 문제 삼아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폭력행위는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학생은 청구인에 비해 신체적 우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행위가 연속되거나 반복적이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단순한 분쟁이었을 뿐,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며 다른 성격과 활동성을 가진 각각의 학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행동임을 감안할 때, 해당행위로 인하여 행정적 처분을 받는다면 학교폭력의 과도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다. 피해학생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피해입증의 자료(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주장에 의해 폭력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은 사건 발생 이후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고, 어떠한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 볼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에 협박 행위 등이 성립되었다 볼 수 없을 것이며, 더불어 피해학생에게 가한 별명은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아니고 피해학생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바,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가해학생은 학교 내 담당 선생님께 모든 사실을 거짓없이 진술하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치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부모를 포함하여 참석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등 가해학생의 반성의 모습은 다분히 매우 높다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목적인 선도와 보호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행정처분이며,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치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특정인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관련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행위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

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됨은 명백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해학생이 ‘허세충’이라는 별명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았기에 그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가해자 기준에서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며, 피해학생은 평소 가해학생들과 친분이 있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 피해학생이 청구인보다 신체적 우위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체격에서 아주 약간의 수치 차이가 있을 뿐 신체적 우위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아이의 심리상태가 점점 이상해짐을 발견하여 아이와 심도있는 대화를 하여 일련의 사건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등 신체적 상해가 아닌 정신적인 상처와 피해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 피해학생, 다른 가해학생들, 목격학생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상황에서 청구인 혼자서만 거짓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청구인 보호자의 자치위원회 참석은 반성보다는 청구인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은 그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반성의 모습이 다분히 높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마. 자치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 조직이며, 실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제6호(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점수가 산출되었으나,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좀 더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5호(특별교육)’으로 조치를 경감하였고, 이 사건 조치는 청구인의 현재 연령과 더불어 향후 성

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고 적법하게 내려진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년 4월경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3명은 같은 반인 피해학생의 물건을 빼앗은 후 훼손하거나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칠판 지우개 가루를 옷에 묻히는 등의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2019년 4월경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3명이 같은 반인 피해학생의 물건을 빼앗은 후 훼손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칠판지 우개 가루를 옷에 묻히는 등의 괴롭힘을 가한 행위 등은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

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학교에서의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처분 등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